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8호로 2022년 6월 8일 이미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시행 2021. 7. 13.)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용도 명확화 등

- 주차환경개선사업 (안 제4조제1호 개정)
- 주차질서 유지사업 (안 제4조제4호 개정)
-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안 제4조제9호 신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2. 6. 8. ~ 6.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시행 2021. 7. 13.)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명확화
 - 안 제4조제1호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를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4조제4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9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세출사용 용도로 신설하였음.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 2021. 7. 1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별 세부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별회계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⑧ 생략